

[발언문 - 천지선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3-2014년 즈음 전자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하며 처음 전자산업의 생식독성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전자산업 노동자들 중에는 10대 후반부터 전자산업에 종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공통적으로 생리불순과 생리통이 심해졌다, 라인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고, 입사 전에 신체검사를 해서 건강한 사람만 뽑을 텐데, 한창 건강할 나이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전자산업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을 수행하면서, 전자산업의 특성이 생식독성 문제를 유발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수율 높은 작업을 위해 청결함이 요구되고, 그 청결함을 위해 유기용제, 그러니까 독한 세척제들을 사용해서 유지보수작업을 한다는 것,

둘째, 전자산업의 어려운 이름들의 공정들을 아주 단순화하면 화학물질을 입히거나 붙이거나 바르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화학물질로 깎아내고, 다시 화학물질로 깎아낸 걸 씻어내고, 이렇게 여러 화학 처리된 웨이퍼를 다시 굽고, 다시 화학물질을 입히고 붙이고 바르고 깎고 씻고 굽고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화학물질을 기체나 액체 상태로 접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어린 나이에 노출될수록, 노출 기간이 길수록, 노출 강도가 강할수록 위험하다는 것,

넷째, 그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소위 규제가 적고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자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새로운 물질이 사용되거나 기존 물질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위험도 많다는 것, 위험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노동자가 희생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유방암 사건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유해인자 복합 노출에 따른 ‘상가작용’(additive effect)이란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에 그 작용이 각 작용의 합과 같은 현상을 말하고, 원고의 경우 노출 환경에 대한 평가가 노출 시점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고, 비정상적 환경에서의 노출 수준은 아주 높을 수 있어 이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산업 근로자의 직업병 판결에서,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오늘 산재신청을 하는 신청인분들도 어린 나이부터 오랜 시간 근무한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아픈 아이들이 왜 더 많은지를 놓치지 않고 산재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그 2세들의 생식독성 관련 직업병을 조속히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